

1.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(재결례)

- (관련 법리)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,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,

대법원은 “미지급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,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” 라고 판시하고 있다.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2129 판결)

- (판단) 관계 자료(사업시행자 의견서, 종전 공익사업 시행 여부 조회 문서 등)를 검토한 결과, ○○○의 토지 ○○ ○○시 ○○구 ○○면 ○○리 210-** 도 7*㎡는 농어촌도로(○도 북이2**호선 ○○선)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용지로 확인되므로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.